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3 선고 2023가단547023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
담당변호사 이관우, 이정석

피 고 B
소송대리인 C
변 론 종 결 2024. 9. 11.
판 결 선 고 2024. 10. 23.

주 문

-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. 4. 12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8,272,246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8,272,2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D에 대하여 원금 3,398,938원과 그에 대한 이자 합계 8,272,246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은 망 E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의 소유였는데, 망인이 2021. 2. 8.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, F, C가 있다. 다. 망인의 상속인들 간에 2021. 4. 20.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고,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.

라.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질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78,300,340원이고,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망인의 사망 무렵부터 현재까지 630,000,000원이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호증, 갑 제5호증의 1, 2, 갑 제6호증, 을 제7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 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,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,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

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).

다. 을 제1~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는 D의 채권자인 G 유한회사, 주식회사 H, I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되었던 사실, 위 각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G 유한회사에 34,187,560원, 주식회사 H에 19,000,000원, I에게 72,000,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.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 지분의 가액은 122,599,924원[= (630,000,000원 - 78,300,340원) × 2/9, 원 미만 버림]이라 할 것인데,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가액의 회복을 마친 금액이 총 125,187,560원에 이르러 이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동혁

별지